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장동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509

발의연월일: 2025. 4. 1.

발 의 자:장동혁·곽규택·나경원

주호영 · 인요한 · 백종헌

조지연 · 김도읍 · 박정하

박덕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에 통합적·효율적 대응을 위한 법적 체계의 구축을 목적으로 산림재난방지 및 피해지 복구·복원에 관한 사항을 「산림보호법」에서 분법하여 2025년 1월 31일 제정되었 으며,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.

한편, 산불,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대응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음. 산불 대응업무 종사자 및 산사태 대응업무 종사자의 대부분은 기간제 계약직신분으로, 임금도 최저시급 수준이고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처우수준이 열악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문제제기 되고 있으나, 실질적으로 처우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음.

현재 시행예정인 법률에는 산불 대응업무 종사자 및 산사태 대응업

무 종사자에 대하여 수당 지급 등의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, 산불 대응업무 종사자 및 산사태 대응업무 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하여 관련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산불진화단·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산불 대응업무 종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급 등 지원할 수 있 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(안 제37조제3항),

산사태대응팀 및 산사태현장예방단 등 산사태 대응업무 종사자에게 도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급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41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하다.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

③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불진화단,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비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대응팀 및 산사태현장예방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비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	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		
제37조(산불진화단 등의 구성ㆍ	제37조(산불진화단 등의 구성ㆍ		
운영) ①·② (생 략)	운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		
<u> <신 설></u>	③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		
	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		
	른 산불진화단, 산불전문예방진		
	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		
	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비 지급		
	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		
<u>③</u>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		
제41조(산사태대응팀 등 구성・운	제41조(산사태대응팀 등 구성・운		
영) ①・② (생 략)	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③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		
	관의 장은 산사태대응팀 및 산		
	사태현장예방단의 업무 수행을		
	위하여 경비 지급 등 필요한 지		
	<u>원을 할 수 있다.</u>		
<u>③</u>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		